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 2005. 12. 30 같은 조례 제18조, 제26조가 삭제되었으나 2008.10 현재까지 연계되어 쓰여 지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신설 명시(안 제5조 제3항)
- 연가계획 및 허가 인용조명 정비 3건(안 제19조 제2항, 제5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일수 7일을 5일로 개정
- 병가 인용조명 정비 1건(안 제21조 제1항)
- 특별휴가 인용조명 정비 1건(안 제23조 제5항)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과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화합을 도모 하려는 것임.

둘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제18조와 제26조가 2005.12.30 개정시 삭제 되었으나, 2008. 10현재까지 연계되어 쓰여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같은 조례 제19조 제2항과 제5항, 같은 조례 제23조 제5항의 인용조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과 제3항으로 변경 정리하는 것임.

셋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연가일수 7일을 연가일수 5일로 개정은 2005. 7. 1 시행한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한 변경 사항임.

□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8. 9. 9 행정안전부와 2008. 9.10 부산광역시로부터 개정 권유를 받은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8. 1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허 용 택